30.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발의일자 : 2021년 11월 19일

○ 발 의 자 : <u>황순자</u>·강민구·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 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만규·이영애 의원

O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2일

2. 제안설명 요지(M안설명자 : 황순자 의원)

□ 제안이유

- 현대는 도심과 산업현장의 대형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피해규모와 횟수도 커지고 있어,
- O 대표적인 재난관리 조직인 소방관서 역할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한 대응 능력향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방관의 처우는 소방대응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인으로, 소방서비스를 직접 체감하는 시민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관련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가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끼쳐 소방대응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 소방공무원의 일상 대비태세 유지와 소방현장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그 산하 기관에 소속된 소방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보건, 안전, 복지, 후생의 4개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였음.
- O 안 제4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시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O 안 제5조는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의 설치와 소방관서 차고 내 매연배출설비의 설치, 건강검진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O 안 제6조는 안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활동과 관련한 장비의 지급과 교체에 대해 규정하였고,
- O 안 제7조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체력단련실과 심신 안정실의 설치 및 운영, 재난현장에서의 이동식 심신회복실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음.
- O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O 이 제정조례안은

► 소방현장에 출동하여 각종 위협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통해, 근무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

○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사 "법"이라한다) 제3조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등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소방관서', '복지시설', '매연배출설비'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음.
 - ▶ 안 제4조(집행계획)에서는 법 제7조와 시행령 제3조의 정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집행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 4조1)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예산지원, 인력・

¹⁾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장비 보강,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사업, 안전사업, 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보건사업)에서는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음.

안 제5조제1호의 '감염관리실'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시행령 제26조2)감염관리대책에 따라 구급대의 이송 및 응급처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오염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척 소독하는 시설로, 2011년부터 설치하여 2021년 11월 기준 8개 소방서에 12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음.

<<u>감염관리실 설치 현황</u>> <2021. 11. 30. 기준>

서별 구분	중부	동	부	서부	북부	수	성	달서	달	성	강	서
설치년도	2011	2021	2016	2011	2012	2021	2016	2016	2012	2016	2021	2016
설치센터	남산	동촌	공산	평리	산격	만촌	범물	월성	현풍	화원	죽전	다사

※ 설치예산 : (2012년) 1기당 120,000천원 / (2021년) 1기당 119,000천원 - 2022년도 설치 예정 개소 : 4개소(신규 2-가창,성서 / 교체 2-남산,평리)

'전용세탁관리'는 현재 「소방장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3) 소방

²⁾ 제26조(감염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³⁾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

장비 보유 기준에 따라 소방관서별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총 61대를 보유하고 있음.

<특수방화복 세탁기 보유현황>

(단위:대)

관서	계(48)	본부	중부	동부	서부	북부	수성	달서	달성	강서	비고
보유기준	48	1	7	6	7	7	6	4	5	5	
현 보유	61	1	9	7	8	8	9	5	7	7	

또한 '19년 국립소방연구원 개인보호장비 오염실태 조사결과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 표면에서 다량의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현장대원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대두되면서, '20년도 국정감사시 개선책 마련 요구에 따라 소방청의 '개인보호 장비 위탁관리 추진 계획(안)' 및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21.11.)에 의해 오염 방화복을 전문세탁관리 시범 운영을 준비중으로 2022년 예산을 신규로 6,000만원 편성하였음.

안 제5조제2호의 '매연배출설비' 는 소방청 훈령 제135호('20.4.1.) 제11조 5항4)을 근거로 소방차고 유해 배기가스5)를 청사내의 사무실 및 대기실에 유입되지 않게 차단하여 발암물질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⁴⁾ **제11조(차고)** ① 소방청사의 차고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와 진·출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② 소방청사의 차고는 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 사무실 및 출동대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직원의 유해물질 노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기실과 별도로 구획한다.

③ 소방청사의 차고는 소방기관별 차량 보유기준 및 차종별 재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한다. 이 때 대원의 안전과 활동(개인장비 착용, 이동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후면은 1m 이상, 차량 간 측면은 최소 2m 이상의 여유면적을 확보한다.

④ 소방청사 내 차고시설은 굴절사다리차의 높이(4m)를 고려하여 5m 이상의 층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⑤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⁵⁾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연구국제기구(IARC)에서 '12.5월 디젤 배기가스를 발암 물질 등급 2A(암 유발 추정물질)군에서 1군(암유발 과학근거)으로 상향 조정함.

위해 설치한 시설이며, 2021년 현재 55개소(센터 49, 지역대 5, 수성구조대 1) 중 53개소6)에 설치되어 있음.

<매연배출시설 설치 현황>

그브	설		제외	비		
구분	바닥 매립형 시스템	덕트 흡입	송풍기형	천장레일형 흡입호스	제외 대상	고
총계	33	1	18	1	2	
중부	봉덕삼덕	대신	대명·명덕·성명· 서문로·남산·교동			
동부	율하동촌공산		신천·불로		안심 (재건축)	
서부	평라비산이현·금호 읍내·동천·태전·내당					
뷖	산격노원무태침산		칠성·대현·복현 칠성지역대			
수성	수성·만촌·상동 구조대·고산·무열로		범물황금		가창 (신축)	
달서	송현본라도원		월성			
달성	옥포화원·논공 현풍구지					
강서	죽전 대천		성사매곡하빈	다사		

안 제5조제3호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진단과 수검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⁶⁾ 재건축 추진중인 2개소 안심과 가창을 제외하고 대구소방본부 소방청사 설치 완비

<특수거강지다 시행 혀황>

<특수건강진단 시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진단병원	수검인원	편성예산 / 1인당	집행예산/1인당		
2019	영남대, KMI, 강미정의원	2,508	565,650 / 225	506,616 / 202		
2020	KMI, 강미정의원	2,648	592,200 / 225	529,600 / 200		
2021	KMI	2,717	683,200 / 251	643,570 / 237		

<정밀건강진단 시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진단병원	진단대상 (유해인자)	수검인원	편성예산 / 1인당	집행예산/1인당	
2020	중앙기업의원 씨젠대구의원	소음	67	16,650 / 37	3,366 / 50	
2021	드림병원, 중앙기업의원	납, 중금속 등 11가지	174 (진행 중)	54,000 / 120	진행 중	

- ▶ **안 제6조(안전사업)에서는**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한 장비를 지급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7)에 따른 소방장비는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을 말함.
- ▶ 안 제7조(복지시설의 운영)에서는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 제2조8)의 복지시설은 소방

⁷⁾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 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quot;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quot;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수련원, 보육시설과 그에 따른 부수되는 시설을 말하며, 체력단련시설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안 제7조제1호의 '체력단련실'은 성명(중부)·동천(서부)센터를 제외한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음.

안 제7조제2호의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에 의해 육체적 피로감 해소와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2015년 신천, 평리, 범물, 다사센터의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본부 상황실을 비롯하여 3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안 제7조제3호의 '심리상담'은 상담 전문가가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직무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도 운영 중에 있음. '심신안정프로그램'은 자연에서 심신을 회복하고자 '스트레스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인해 추진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음.

안 제7조제4호의 '이동식 심신회복실'은 대형재난으로 인해 장

시간 현장활동 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에 8대 정도 배치되었으나, 대구는 미배치되어, 필요시중앙119구조본부 영남 특수구조대 차량을 요청하여 운영 중임.

< 전국 이동식 심신회복실 배치 현황 >

시도	대수	회복지원차 배치 현황	금액(박	백만원)	비고(구입년도)
		수도권특수구조대(경기 남양주)	330		버스형(2020.04)
중앙 119	4	충청강원특수구조대(충북 충주)	352	국비	버스형(2020.11)
구조 본부	4	영남특수구조대(대구 달성)	459	<u> </u> 수 미	트레일러형(2020.04)
		호남특수구조대(전남 화순)	459		트레일러형(2020.04)
서울	1	현장대응단(서울 중구)	315		버스형(2019.01)
대전	1	특수구조단(대전 동구)	282	TIHFHI	버스형(2020.10)
비조		조치원소방서(조치원)	138	지방비	버스형(2021.05)
세종 	2	세종소방서(세종)	768		버스형(2020.08)

 ▶ 안 제8조(후생 복지사업)에서는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였음. 현재 건강뿐만 아니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17개 동호회》에 649명이 활동 중이며, 국민행복소방정책 및 소방관서 평가 추진성과 결과 우수 기관· 공무원에 대해 포상 및 시상을 하고 있으며, 市 공무원 후생복지

⁹⁾ 스포츠 14, 캠핑1, 영화관람1, 드론1

제도에 관한 조례 6조10), 소방공무원법 제20조11)에 의해 소방청 주관 국외연수 일정에 참여 하고 있음. 또한 하계휴가 기간 휴양 시설 사용료를 지원12)하고 있음.

▶ 안 제9조(급식환경 조성)에서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현재, 직할센터의 구내식당은 민간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라 식자재의 질 저하, 민간위탁 계약의 어려움, 휴일 미운영, 현장출동대원 급식 문제 등으로 인해 불만사항이 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영급식소 설치 및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 여건상 안정적 급식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용자 위주의 운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영양을 공급코자 그 근거를 마련하였음.

¹⁰⁾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6.}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7.} 해외현장체험(배낭여행)

¹¹⁾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¹²⁾ 인사혁신과에서 운영 중인 하계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사업기간 : 매년 하계휴가 기간

⁻ 사 업 비 : 48,000천원(100천원×480가족)



< 8개 소방서 구내식당 운영 현황 >

(2021. 12월 현재)

	<u>Z</u>	할센터	외곽센터
운영 부서		서 내 3과, 1단 구급대 포함)	44개 부서(항공대 포함) 40개 안전센터 지역대 2(대명·확현, 수성구조대 1, 항공대 1
	민간위탁		
운용 방법	개인 계약	업체 계약	공무직 배치
	중부, 동부, 달성	셔, 밖, 성 달 강서	ㅇㅜㅋ 메시
	영양사 미배치	영양사 배치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따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고, 4개 시·도(부산, 경북, 전북, 전남)에서는 「소방기관에 대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지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상에 경남은

급식환경 조성 조항을, 전남에서는 조리인력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 대전, 강원에서는 복지 증진 사업에 구내식당 운영비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급식환경 조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본부 및 소속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영양사 등 인력채용, 급식시설, 급식비 등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위탁)에서는 보건, 안전, 복지, 후생 분야 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법을 근거로 제정안에서 명시하는 사업 중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다만, 안 제9조 급식환경 조성 부분은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환경, 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서 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19.03.28
부 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6.09.21
인 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8.11.05
광 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13.07.01
대 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1.06.30
세 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1.07.15
울 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9.08.01
경 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7.05.04
강 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04.03
충 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19.11.14
충 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9.05.30
전 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7.07.07
전 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9.08.01
경 북	없음	-
경 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0.06.25
제 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1.06.25

참고 2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부 산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01.13
전 북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07.09
전 남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06.18
경 북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0.31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매연배출설비가 미설치 된 곳이 있는지?	○ 대구 소방관서 55개소 중 53개소는 기설치, 신축·재건축 중인 가창, 안심도 현재 설치 중으로 100%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군위의 대구시 편입 시 경북소방 본부와 복리 후생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 전반적으로 복리 후생의 수준은 비슷함.
○ 그렇다면 군위 소방서는 어디소속이 되는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 먼저 서부소방서에 편입되었다가 강북 소방서가 개청되면 강북소방서로 변경될 예정임.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시항은 시 전체 계획과 함께 할 예정임.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대구 소방안전 본부장의 지위를 격상하라는 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하였는데? 격상된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명칭은 그대로인지?	○소방기본법상에는 소방본부장임. 대구의 경우 안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소방안전 본부'로 명명하였고, 타 시도의 경우 재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음.

5. 토론요지

O 없 음

6. 수정안 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